

국제협력진흥기금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06. 3.
개정	2013. 1.
개정	2024. 1.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우송대학교 국제협력진흥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위원회는 우송대학교의 국제협력 진흥을 위한 기금(이하 “국제협력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위원회의 사무소는 우송대학교 교내에 둔다. [개정 2013.1.1.]

제4조 (사업) 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국제협력기금의 모금 및 관리
- 국제협력기금 모금과 관련된 홍보활동
- 국제협력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국제협력 연구 및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 국제협력에 따른 교환학생 장학금 지원
-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교육 기본 시설비 지원
- 기타 국제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

제 2장 재정 및 회계

제5조 (기금의 조달 방법 등) ①이 위원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는 우송대학교 국제협력기금으로 조성된 출연금과 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수익으로 충당한다.

②우송대학교 국제협력기금은 국제협력 협약에 의하여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 등록금의 10%의 범위 내에서 대학 예,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제6조 (국제협력기금의 관리) ①독지가가 출연한 국제협력기금은 별지1호 양식의 기부증서에 의하여 기부채납 받아 우송대학교 국제협력진흥기금위원회의 계정에 수입조치 한다.

②국제협력기금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회계원칙) ①이 위원회의 회계는 우송대학교 재무규정 및 회계원칙에 따른다.

②이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우송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조 (임직원의 보수) 이 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3장 위 원 회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이 위원회는 본교 교직원, 동문, 및 산업체 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부총장, 국제교류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개정 2024.1.18.]

③고문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본 대학 또는 해외 자매대학 총장 중에서 위원장이 추대한 자로 하되,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④위원장은 행정부총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감사는 위원회에서 1명을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감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0조 (임원) ①이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명
2. 고 문 약간 명
3. 감 사 1명
4. 간 사 1명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기금 증식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기금의 예산, 결산 및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위촉 및 임명에 관한 동의
8.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장 보 칙

제13조(준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우송학원의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고 일반적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제14조(경과규정) 이 규약의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18. 우송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